

2026년 경기북부 현장클리닉 참여기업 모집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북부권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경영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「경기북부 현장클리닉(컨설팅)」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8월

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□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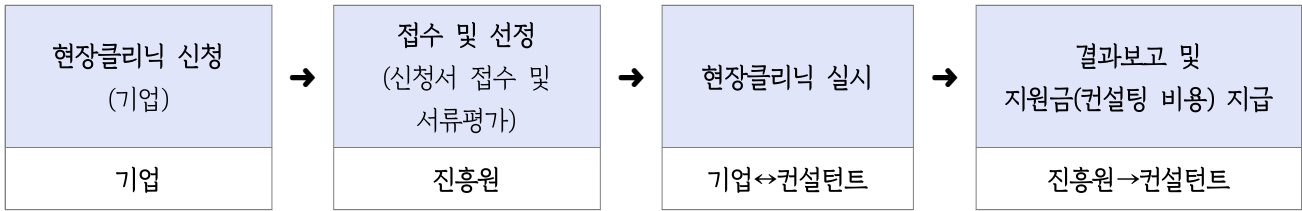
- 사업개요 :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 애로에 대하여 전문가 현장클리닉을 통하여 신속한 해결 지원
- 신청기간 : 2026. 8. 19.(수) 09:00 ~ 9. 1.(화) 18:00
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경기북부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
 - ※ 경기북부 : 가평, 고양, 구리, 남양주, 동두천, 양주, 연천, 의정부, 파주, 포천
- 기타사항
 - 최근 2년간(2024년, 2025년) 경기북부 현장클리닉 사업의 수혜기업은 참여 제한
 - 서류평가를 통하여 선정되며, 신청기업이 컨설턴트를 선발 후 지원사업 접수
 - 경기북부 현장클리닉 선정된 과제는 반드시 2026. 11. 27.(금)까지 완료되어야 함

□ 지원내용 및 절차

- 지원내용 : 컨설팅 비용 100%(기업별 현장 컨설팅 5회 / 최대 1,500천원 한도) 지원
- 지원분야 : 경영일반, 수출/판로, 인증/R&D, 디지털전환/AI 등

구 분	세부 내용
경영일반	자금, 인사/노무, 세무/회계, 법률, 사업성장 및 경영전략 수립, ESG 등
수출/판로	원자재 및 물품구매 전략, 수출애로, 무역보험, 마케팅 및 유통 전략 등
인증/R&D	기술지원 및 자문, 정부과제 수주, 특허·지식재산 관리 등
디지털전환/ AI	온라인플랫폼 구축, 전자상거래 구축 및 관리, AI 활용 디자인/제조공정/마케팅
기 타	신청기업 우선 해결 애로사항

○ 추진절차



○ 확인사항(必)

- 신청기업이 사전에 직접 적합한 컨설턴트를 선발하여 지원사업 신청
- 컨설턴트 등급 및 수당(수임료)은 진흥원 관련 규정에 따름 ※ 별표1 참고
- 신규 참여 컨설턴트는 과제수행 전 등급 확인을 우선 실시함(서식 3호 제출 필수)
- 컨설턴트 1인당 기업 2개사 이내로 매칭(2026년 상반기 경기북부 현장클리닉 포함)
- 수행 컨설턴트는 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□ 사업 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

- 경기기업비서(www.egbiz.or.kr) 온라인 접수

○ 제출서류(※컨설턴트를 사전에 선발 하셔야지만 제출서류 구비가 가능함)

구분	제출서류
필수사항	• 【서식 1】 기업애로 현장클리닉 지원 신청서(서명 또는 직인날인 필수) • 【서식 2】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서명 또는 직인날인 필수) • 【서식 4】 기업애로 현장클리닉 수행계획서 • 【서식 5】 기업애로 현장클리닉 컨설턴트 윤리 서약서(서명 또는 직인날인 필수) • 사업자등록증명(국세청 발급) 또는 공장등록증명(정부24 발급)(2026년 6월 1일 이후 발급) • 국세 납세증명서(국세청)(유효기간 확인 필수) • 지방세 납세증명서(정부24 발급)(유효기간 확인 필수) • 중소기업 확인서(https://sminfo.mss.go.kr)(유효기간 확인 필수) •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날인본)
선택사항	• 【서식 3】 기업애로 컨설턴트 참여 신청서(경기북부 현장클리닉 미참여 컨설턴트 대상) • 공장등록증명(정부24 발급)(2026년 6월 1일 이후 발급)

□ 문의처

○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거점센터 서일교 과장

- TEL : 031-850-7126(상담시간 : 평일 10:00~17:00)
- E-mail : seo33301@gbbsa.or.kr

컨설턴트 등급 및 수당

등급	주요자격 및 경력	일일 수당	비고
A	1.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2. 대학 부교수 이상 3. 변호사, 변리사, 회계사, 기술사, 세무사,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.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.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(상장기업)의 이사급 이상으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20년 이상 일반실무경력자 6. 기타 일정경력을 갖춘 경영 및 기술전문가로서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	300,000	
B	1.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2. 대학 전임강사 이상 3. 변호사, 변리사, 회계사, 기술사, 세무사,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미만 실무경력자 또는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.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미만 실무경력자 5.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과장이상으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.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	250,000	
C	1.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2. 대학 시간강사 이상 3.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.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	200,000	